

1. 개정이유

현재는 한 관리자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필지마다 다른 감리자가 지정됨에 따라 감리 계약을 필지 수만큼 반복하여야 하는 등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 지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감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(안 제13조제6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, 한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① ~ ⑤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3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, 한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.</u>